

# 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청이 7월29일 입법예고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전국에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제정이후 3번째 마련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사업에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고 불이행시는 제재하기로 한 점으로, 80년 첫 개정때 당시 발족된 예정이던 환경청의 오염규제권과 타 부처간 협의내용을 주로 반영했고 82년의 두번째 개정때는 새로 발족된 환경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지시설자금 확보방안 등을 다루는 등 환경행정의 기본적인 범위와 기능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과거 개정안과 달리 실제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 1. 개정사유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에까지 확대하고, 타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식물류를 합부로 채취·포획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을 도입하여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비산분진을 발생하는 사업은 비산분진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 연료첨가제와 합성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의 문제점을 보완·개정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의 현실 적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민간의 사업에까지 화

대함. (안 제5조)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식물류로서 그 보전이 필요한 동·식물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동·식물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는 채취·포획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제협약에 의하여 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류의 수출·입시에는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변환경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2항).

라,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부과기간을 조정함. (안 제19조의 2)

마, 배출시설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취소요건을 정함(안 제22조의 2)

바,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이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26조의 2)

사,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유해성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안 제31조)

아, 합성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의 제조, 수입이 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조·수입 등의 금지 또는 제안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 3)

자, 과태료부과를 행정기간 부과제도로 전환함. (안 제69조의 2)

### 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

환경보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비산 강하하는 미세한 고체상의 입자상 물질」을 「비산 강하하는 입자상 물질」로 하고, 동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의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16, 「합성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및 화합물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화합물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중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계획」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 2 중 「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기관의 계획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야생물·식물 보호) ① 환경청장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산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등 동물류와 식물류(이하 「미보호 야생동·식물」이라 한다)로서 그 보전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및 멸종방지를 위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미보호 야생동·식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동·식물(이하 「특정 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은 채취, 포획, 이식, 수출, 가공, 보관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미보호 야생동·식물 중 국제협약에 의하여 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류 또는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악취발생물」을 「악취」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한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변경허가에 갈음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변환경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제14조의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또는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 등이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방지시설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일부 또는 경미한 사

항의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생활하수를 폐수와 병합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오물청소법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한다.

제17조 중 「아니하거나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 2 제1항 중 「이전명령을 받은 후」를 「이전명령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로부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지정하는 자」를 사업자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자가측정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등」으로 한다.

제22조의 2를 제22조의 3으로 하고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 (측정대행자의 지정) ① 측정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청은 공익상의 필요, 시설의 지역적 분포 또는 측정대행의 수요를 감안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규모와 구역·측정항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 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은 측정대행자의 지정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배출시설 관리인이 그 관리내용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배

출시설관리인이 관리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 (비산분진의 규제)

① 비산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산분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사업 또는 시설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제1항중 「제작하여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검사방법은」을 「검사방법 및 절차는」으로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 또는 시험시설의 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 자동차 배출가스 장치의 성능이 환경청장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환경청장은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규제) ① 환경청장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보전상 위해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첨가제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②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자 하는 자와 첨가제를 사용하여 자동차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첨가제의 종류 및 성장, 첨가제의 사용목적등을 미리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첨가제로 인한 유해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동차연료용 첨가제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첨가제의 제조 또는 사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 3 (교통소음방지시설등) ① 환경청장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의 신설 또는 확장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정온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 및 철도관리기관 의장에게 교통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로 및 철도관리기관의 장은 교통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계상의 소음방지효과 등에 관하여 미리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교통소음 방지시설의 종류, 사업의 범위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제1항중 「당해지역」을 「당해지역안의 소음원」으로 한다.

제34조의 2의 제목중 「통제」를 「제한등」으로 하고, 본문중 「소음규제지역내에서 자동차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음기 및 소음방지 장치의 정비, 대체 또는 그 자동차 사용의 정지등」을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경음기 사용의 금지, 속도의 제한, 우회 등의」로 한다.

제4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 3 (합성화학물질의 관리) ① 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장

및 안정성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성화학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성화학물질의 제조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청장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합성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및 유통의 금지 또는 제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제1항중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달성 유지가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중 폐수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료를 면제한다.

④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제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사업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오염방지 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강제징수) ①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 사업단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3호의 「금고이상」을 「이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으로 하여 이를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등록의 취소등)① 환경청장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5. 등록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신규계약에 의한 영업을 계속한 경우

7.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도급받은 방지시설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경우

② 환경청장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방지시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등록된 종류 이외의 방지시설업을 행한 경우

3.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방지시설의 기술능력 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변경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방지시설업을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경우

7.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61조의 2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 관련 사업 및 시설운영」으로 「5년마다 1회이상 환경청장이 지정하는」을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시기와」로 한다.

제62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 4(청문) 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2. 제2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64조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검사」를 「이 법에 의한 허가, 등록, 지정 및 검사」로 한다.

제66조 제6호 중 「제30조」를 「제30조 제1항」으로 한다.

제67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대행을 한 자

